

#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br>번호 | 2019 |
|----------|------|

2017년 9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안일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일 : 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 가. 제안이유

- 현재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일은 비단 어느 한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 해당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야 할 중대한 숙제이자 책무가 되었음.
- 청소년·청년들의 문제를 마을 안에서 보듬고 건전한 인격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능통한 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청소년·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역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강북구 인근의 경우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여건은 갖춰졌으나 청소년·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동북권역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마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배움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마을배움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주체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배움터 사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마을 배움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능통한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 또한 민간위탁 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프로그램에 쉽게 반영하는 등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배움터 운영 및 홍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음.

### 2)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주요내용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사업비 : 연간 450백만원
- 위·수탁 사무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시설 관리 · 운영 일체
- 리모델링 및 설계 참여, 개소 전 시범사업 운영
- 청소년· 청년들의 마을살이 경험확대, 상호 돌봄을 통한 주체적 성장 도모
- 동북권역 지역 환경에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마을학교 거점공간 운영 및 마을배움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3) 민간위탁 시설 현황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31-6(우이동 170-10)
- 규모 : 연면적 307.36㎡(지상 3층 리모델링)
- 공간구성(안) : 마을학교, 청소년 대안학교(주말학교), 마을카페, 다목적홀 등
- 진행상황 :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중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위치도</p>  |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p>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학교와 마을의 학습공간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 해결책을 마을 안에서 모색하고자 강북구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강북구 마을배움터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31-6(우이동 170-10)
- 규 모 : 연면적 307.36㎡(지상 3층 리모델링)
- 공간구성(안) : 마을학교, 청소년 대안학교(주말학교), 마을카페, 다목적홀 등
- 진행상황 :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중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공모
- 사업비 : 연간 450백만원
  -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주민 연계, 청소년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구상 및 홍보 등 일반적인 사업과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사비 및 인건비 편성
- 위·수탁 사무

-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배움, 돌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적 성장 도모
- 동북권역 지역 환경에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실행
- 마을학교 거점공간 운영 및 마을배움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민·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나.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마을배움터는 청소년·청년들의 문제를 마을 안에서 보듬어 건전한 인격 성장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마을 배움터는 처음 조성하는 것임.
- 마을배움터와 유사한 시설로는 마을활력소,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각 시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구 분   | 청소년수련관  | 마을활력소  | 마을배움터  |
|-------|---|--|--|
| 정의    |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설치한 시설 | 시·구에서 유휴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시설 매입 등을 통해 권역별로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 급속한 사회변화와 왜곡된 교육 현실로 청(소)년들의 경쟁 및 고립이 심화되어 발생하는 마을의 문제를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주민 전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간                              |
| 기능    |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   | - 마을활력소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br>- 마을주민의 참여확대 및 소통을 위한 나눔터 및 사랑방 운영<br>-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그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청소년, 청년이 예술적 창의성을 발휘하며 마을 안에서 화합하는 공간(마을문화 작업실 운영,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이 아닌 문화적 관계 맺음으로 건전한 인격을 만드는 공동체 공간,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공간, 주민들 간 소통과 마을 배움 네트워크 구축 |
|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제27조제4항 신설)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③ "마을활력소"는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1항의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 2015년 “동북권역 마을학교 거점공간 마을배움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의회에서 의결(2015년 12월 21일)되었으나, 건립예정부지(강북구 번동) 소유주의 반대로(번동성당 사무장 마을배움터 건립 반대 의견 제시), 현재의 부지(강북구 우이동)로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의결(제270회 임시회, 2016년 9월9일)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민간위탁 추진 경과 〉

- 시장요청사항
  - 602호(14.6.12),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 824호(14.7.8), 시 소유 건물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시민이용활성화방안미련)
- 내부방침
  - 4524호(15.5.13), 마을속 문화학교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9360호(15.10.3), 동북권역 마을학교 거점공간 마을배움터 건립 추진계획
  - 4264호(16.6.2), 2016년 동북권역 마을학교 거점공간 마을배움터 사업계획 변경추진

〈 추진경과 〉

- '15. 12. 21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64회 정례회 의결
- '16. 01. 07 : 마을배움터 관련 조례 개정
- '16. 02. 17 : 번동성당 사무장(양혁동) 마을배움터 건립 반대 의견 제시
- '16. 02. 25 : 번동성당 마을배움터 건립 반대 의견서 제출
- '16. 03. 11 : 마을배움터 건립 반대 검토 결과 사업 계획 변경
  - 강북구 지역에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
- '16. 06. 02 : 마을배움터 사업 계획 변경 추진

〈 변경 내용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위 치 | 강북구 번동 386-36, -37                       | 강북구 우이동 170-10                         |
| 면 적 | 토지 303.3㎡, 건물 680㎡                       | 토지 340㎡, 건물 307.36㎡                    |
| 예 산 | 2,266백만원<br>(16년 1,178백만원, 17년 1,088백만원) | 2,011백만원<br>(16년 1,196백만원, 17년 815백만원) |
| 방 법 | 신축                                       | 증축 및 리모델링                              |



- '16. 09. 09 :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70회 임시회 의결
- '17.3.2,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조성 추진계획

-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프로그램에 쉽게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상황에 능통한 기관(단체)이 직접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마을배움터의 민간위탁은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능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마을 안에서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마을배움터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수행 주체, 추진 절차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마을배움터의 기능(강북마을학교(마을속문화학교), 청년허브, 마을방송국, 청소년대안학교, 다목적배움터공간, 다목적홀, 마을카페, 문화예술배움공간, 마을극장, 다목적연습실, 기계실, 창고, 주차장 등)이 기존의 청소년 수련관



및 문화회관, 마을활력소,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등과의 기능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에서는 청소년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려고 하는바, 이는 평생교육국의 업무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둘째, 동북권역에 마을배움터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강북지역에 ‘청소년 문화공동체’와 ‘재미난 삼각산 마을학교’ 등 마을 배움에 대한 기반 조성이 잘 되어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을 배움에 대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 이미 민간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역에 관의 개입으로 오히려 자립가능성 저해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마을배움터 조성 등에 대한 자치구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지역적인 설치 기준 없이 강북구에만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려는 것은 선심성, 특혜성 조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배움터의 추가적인 조성계획이 없다고 함.

-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마을마다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민간위탁기관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을의 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한다는 취지와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최초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도, 마을배움터의 목적(마을 문제를 마을안에서 해결하도록 함)과 추진하게 될 사업의 연관성이 충분한지, 마을배움터 건립 추진계획에 권역별 거점 공간 기능과 역할이 충분한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됨.

- 따라서, 서울시에서 특정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만을 위한 마을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4억 5천만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2019 |
|----------|------|

제출년월일 : 2017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현재 한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증가, 청년실업 등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청소년·청년들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일은 비단 어느 한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 해당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나야 할 중대한 과제이자 책무가 되었음.
- 나.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사업은 청소년·청년들의 문제를 마을 안에서 보듬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시작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 역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됨.
- 다. 현재 강북구 인근의 경우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여건은 갖춰졌으나 청소년·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동북권역에 청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마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배움공간을 조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마을배움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주체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 라.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설치·운영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시설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307.36㎡)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73길 31-6(우이동 170-10)
- 공간구성(안) : 마을학교, 청소년 대안학교(주말학교), 청년 직업체험 카페, 다목적홀 등



〈위치도〉



〈사진〉

- 개소일자 : 2017. 12월(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 청년, 마을주민 등

### 나. 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시설 관리·운영 일체
  - 리모델링 및 설계 참여, 개소 전 시범사업 운영
  - 청소년·청년들의 마을살이 경험확대, 상호 돌봄을 통한 주체적 성장 도모
  - 동북권역 지역 환경에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 계획수립 및 실행

- 마을학교 거점공간 운영 및 마을배움 운영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 주민·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요예산 : 연간 450백만원 (2018년 예산편성 추진)
- '18년도부터 인건비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한 예산 편성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마을배움터 운영은 청소년 배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마을배움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배움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 및 다수의 사업경험이 필요하며, 이는 관 주도로 시행되기 어려움.
- 또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마을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27조(마을공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 및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간을 자치구 또는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는 마을배움과 돌봄, 주체적 성장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 환경에 따라 특화된 마을배움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마을배움 운영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배움 사업 발굴 시행
3. 주민과 청년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배움 활동가 양성
4. 마을학교의 거점 공간 운영
5. 그 밖에 마을배움 활성화와 주민 활동가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지역공동체담당관 공동체공간조성팀 김승희 (☎ 2133-6344 )